

06 주민세

주민세 균등분(개인·개인사업자·법인), 재산분, 종업원분을 2021년에 주민세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하고 납부기한을 8월로 통일

1. 납세의무자

- (개인분)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
- (사업소분)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
- (종업원분)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

2. 과세표준 및 세율

- (개인분)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* : 1만원 이내(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세액)**
 - *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
 - **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,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 이내(자치단체 조례로 읍·면·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)
- (사업소분)
 - ①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: 5만원
 - ②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:

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	세 액
50억원 초과	20만원
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0만원
30억원 이하	5만원
그 밖의 법인	5만원

- ③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: 1제곱미터당 250원
 - * 폐수,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2배 증가세, 500원
 - * 과세제외 면적 : 종업원의 보건·후생·교양시설(기숙사, 사택, 구내식당, 의료실, 체육관, 도서관 등),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·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
- (종업원분) 종업원 급여 총액의 1,000분의 5
 - * 조례로 표준세율의 50%범위에서 가감하는 등 탄력세율 적용 가능

3. 과세기준일 및 납기

- (개인분) 과세기준일 : 매년 7월 1일 / 납기 매년 8.16. ~ 8.31.
- (사업소분) 과세기준일 : 매년 7월 1일 / 신고납부 매년 8. 1. ~ 8.31.
- (종업원분)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